

2. 都市計劃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684號 1992. 7. 1

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송·통신시설

9. 폐차장

10.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

11. 청소년시설

12. 장례식장

제 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조의2 (광역시설)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구역안에서 광역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시설 : 도로·광장·철도·하천·운하·녹지·수도·공동구·전기공

급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2. 2이상의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공항·공원·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유통업무설비·수도·하수도(종말처리장에 한한다)·도살장·유수지시설·폐차장

제2조의3 (공공시설)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 철도
4. 하천
5. 운하
6. 항만

- 7. 공항
- 8. 녹지
- 9.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10. 공공용지
- 11. 수도
- 12. 하수도
- 13. 공동구
- 14.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15.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16.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17. 방풍설비
- 18. 방수설비
- 19. 방화설비
- 20. 사방설비
- 21. 방조설비
- 22. 유수지시설

제 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자동차정류장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화물터미널
- 5. 철도
 - 가. 일반철도
 - 나. 도시철도
 - 다. 고속철도

제 3조제1항제7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마. 체육공원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 (단지조성사업의 규모)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면적규모가 1만제곱미터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면적규모가 3만제곱미터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면적규모가 3만제곱미터인 것을 말한다.

제 4조의2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 5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를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도로변”을 “도로변·논두렁·밭두렁·대밭·축사 및 그 부대시설지”로 한다.

3.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에서의 준설

4.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공고된 토지(집행계획 수립대상으로서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중 당해 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토지에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이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녹지지역에 쌓아두는 중량이 50톤 이상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콘테이너·드럼통 또는 병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1. 녹지지역안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등을 받지 아니한 토지의 분할

2. 건축법 제45조제2항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3.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이행보증금의 예치사유)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의4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의 방법등)
①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제5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혜가를 받은 자가 혜가의 내용대로 위해방지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위해방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재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3.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국가계획과 관련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5. 법 제13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의 승인·고시 및 시장·군수에의 송부
6.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상실의 고시
7. 법 제1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8. 법 제1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9.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 법 제20조 및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제한구역과 도시개발행정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10. 법 제25조·법 제25조의2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변경·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공람 및 고시
11.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대지 처분계획의 인가
12. 법 제5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과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공사완료의 공고
13. 법 제80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여 준용하는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지형도의 송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나.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 및 공람

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라.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등의 인
가

마.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 7 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의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
경지정

3.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4. 도로중 주간선도로, 학교중 대학등 도
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
시계획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
항

제10조의2제1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나목(공원중 도시자연

공원을 제외한다) 및 제2조각호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2.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 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집행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집행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도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집행계획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기간
4. 사업시행계획도서

제10조의3제1항중 “제7조의2”를 “제7조의 3”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예정 구역내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측량하여 도시계획결정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조사·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군수가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사·측량할 사항은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도시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동항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4. 시장 및 운동장(종합운동장 및 9홀이상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7.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관리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하수도관·전선로·통신선로·가스관·송유

관·열수송관·전기통신회선설비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제13조제1항의 공동구점용예정자”를 “공동구점용 예정자”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15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 건설부장관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1종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2종일반주거지역 :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3종일반주거지역 :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

제16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 (지구의 세분) 건설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미관지구

가. 제1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제2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라. 제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마.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보호지구

-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중 “제3조제1항제4호 나 목 및 다목의”를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및 화물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제4호가목중 “중소기업진흥법 제7조”를 “중소기업진흥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의5제3항제2호중 “건축법 제5조제2항”을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제19조의8 내지 제19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8 (상세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20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2.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3.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이내

의 지역

제19조의9 (상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 법 제2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주차장
2. 광장·공원·공공공지
3. 수도, 하수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제19조의1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법 제20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해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거나 이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공원 또는 하수도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등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노인정·어린이공원·사회복지관·수도 및 하수도등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제20조제1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후 2년이내의 이축

사.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 제1항의 도시계획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증·인가증 또는 허가증

등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자 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

의 성명 · 주소)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나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는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

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제27조 본문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8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제1항제1호중 “허가”를 “인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중 “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보나 당해 시 · 군지역을 정기간 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중 “시장 · 군수”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공사비(전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말한다)”를 각각 “공사비(조사 ·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중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 부위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공무원인 위원”을 “시·도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도의회의원·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시공동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 2이상의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가 이를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의 제목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의 시장”을 “시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3에서 같다) 또는 구의 구청장”으로, “시의 부시장”을 “시의 부시장 또는 구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조제4항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있는 자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2 (소위원회) ①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72조제2항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의3의 제목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구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중 “시장”을 각각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65조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시계획위원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목중 “도시계획구역의”를 “도시계획구역외의”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본문중 “그 실시계획인가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의 승인을 할 때에”를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로 한다.

제67조 본문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2. 시가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1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3.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1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제28조제1항 · 제48조 · 제52조제2항 · 제60조 및 제63조제2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 · 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철거된 건축물등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전에 부락공동시설 · 공익시설 ·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철거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 및 연구지구 · 업무지구 및 임항지구는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 · 임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의 전체위원수에 대한 비율이 제58조의2제3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

도시계획법이 개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됨에 따라 광역시설의 종류와 상세계획구역의 대상지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도시계획구역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폐차장,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 청소년시설 및 장례식장등을 추가함(영 제2조).
- 나.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치거나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도시계획시설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인 광역시설의 종류를 도로·하천·공항·공동기지·폐기물처리시설등으로 함(영 제2조의2).
- 다.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개발제한구역등 6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및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영 제6조).
- 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1종·2종·3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지역을 현재는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도시의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한 유통상업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
- 마. 지구의 종류에 위락지구 및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기능의 증진과 도시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시설보호지구를 당해 지구의 기능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함(영 제16조 및 제16조의2).
- 바.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세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및 철도역주변지역을 추가하고, 상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도로·주차장·공원·수도 및 공동구등으로 정함(영 제19조의8 및 제19조의9). 〈법제처 제공〉